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6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1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국장 박상돈)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중복 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서울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도시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시행 등(안 제3조~안 제6조).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안 제19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1인) : 부구청장
 - 부위원장(1인) : 디자인업무 담당국장
 - 위원 : 구의원, 도시계획, 건축, 조경, 조형예술, 색채, 디자인 등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심의대상
 -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 사업의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의 시행 중 사업내용, 범위, 사업비 등이 30%이상 변경시 재심의를 거쳐야 함.
- 영등포구 디자인상(안 제21조).
 - 민간부문의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창의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물 등에 디자인상 시상 및 부상 지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본 조례안은 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8. 2.21 제정·시행되어 오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 도시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 등 기존 위원회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추어 우리구 심의대상 사업규모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일관된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의 명수를 명시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안 제5조 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3항 제1호를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75호
----------	------------

제안년월일 : 2011. 9.

제 출 자 : 이재형 위원

1. 수정이유

-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의 명수를 명시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 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3항 제1호를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 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3항 제1호를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 4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구의원·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u>설치할 수 있다.</u></p> <p>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u>몇</u>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u>구의회회장이 추천한 구의원</u></p> <p style="margin-left: 20px;">2.~3. (생략)</p> <p>④ (생략)</p>	<p>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 ----- ----- ----- <u>설치할 수 있으며,</u> <u>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 ----- -----</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조례안과 같음)</p> <p>③ (조례안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1. <u>구의회회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u></p> <p style="margin-left: 20px;">2.~3. (조례안과 같음)</p> <p>④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5 호
----------	--------

제출연월일 : 2011.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하여 일관된 디자인정책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 정책 및 사업 (제3조~제6조)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제19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1인) : 부구청장
- 부위원장(1인) : 디자인업무 담당국장
- 위원 : 도시계획, 건축, 조경, 조형예술, 색채, 디자인 등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심의대상
 - ①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의 시설물 디자인
 - ②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별표】**
 - ③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의 시행 중 사업내용, 범위, 사업비 등이 30%이상 변경시 재심의를 거쳐야 함.

다. 영등포구 디자인상(제21조)

- 민간부문의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창의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상 시상 및 부상 지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09. 6. 16. ~ 7. 6. 20일간)결과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색채·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
2.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별표의 도시디자인대상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경관계획 등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구의원·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역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도시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다.

제7조(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 때 시에서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4.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
5. 별표의 공공건축물·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민간지원 및 영등포 디자인상 수여에 관한 사항
8.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득한 사업의 시행중 사업 내용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시(계획내용, 사업범위, 사업비 등이 30%이상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도시계획·건축·조경·조형예술·색채·디자인·환경 및 조명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주민대표·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2.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한 사항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 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판매대, 마을버스폴사인, 방호울타리, 휴지통 등 서울시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8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업추진협의체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또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 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업추진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디자인상 등) ① 구청장은 창의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물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구에서 건축하는 협의(허가)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다.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마. 보도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15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는 제외함
문화관광 시 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각종 안내표지판 라. 동상·기념비 등(「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	
가로녹지 시 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 시 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부대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4. 기타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기타 시설물	가. 광장 나.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최 범 위원</p>	<p>제2조 제1항의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를 “<u>각종 시설물의 형태·재료·색채·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u>”로 수정</p>	<p>○ 미반영. 창의성과 경제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미반영</p>
	<p>제20조 제1항의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물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를 “<u>구청장은 창의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물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u> 시상할 수 있다.”로 수정</p>	<p>○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오창섭 위원</p>	<p>제2조 제1항의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를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u>공공건축물, 도시 구조물, 그리고 가로 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색채, 조명 등을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u>”로 수정</p>	<p>○ 미반영. 제2조 3항 “공공시설물”의 정의와 중복되어 미반영</p>
	<p>별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3항 가로시설물에 “<u>보도블록</u>”로 추가</p>	<p>○ 반영.</p>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김은성 위원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3항 가로시설물 중 지하철시설은 “ <u>지하철부대시설</u> ”로 수정	○ 반영.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4항 “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한다”를 “ <u>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한다</u> ”로 수정	○ 반영.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서은실 위원	경관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사업시행의 편리함을 우선 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시에는 재심의 조항을 넣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조항 추가 제5조 “ <u>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득한 사업의 시행중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시 (계획내용, 사업범위, 사업비 등이 30%이상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u> ”로 추가	○ 반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③에 추가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이준환 위원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4항 기타에 <u>옥상광고물(전광판 및 일반광고판)</u> 추가	○ 미반영. 옥상광고물은 『옥외광물등 관리법』의 옥외광고물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